

새로운 視角에서 본 入養

卓 鍊 澤
(前 大韓社會福祉會會長)

차 례

머리말

- I. 늘어가는 入養의 世界的 關心
 - II. 多様な 入養對象兒童의 類型
 - III. 養父母의 選擇과 海外入養에 對한 贊反
 - IV. 보다 바람직한 入養을 위하여
- 맺는 말
-

머 리 말

入養은 家族構成의 缺陷을 補完하려는 欲求充足에 不可缺한 것인 同時에 不遇한 兒 童 生命을 代理父母의 愛情으로 保護하는 恒久的인 福祉的 法律行爲라고 定義해도 無放할 것 같다. 그리고 成功的인 入養은 아기의 幸福을 바라는 마음에서 扶養을 拋棄하는 生父母의 懇切한 所望을 成就시켜주는 가장 아름다운 人道的 行爲일 것이다.

入養을 周旋하는 第三者는 그가 個人이든, 公認된 民間 入養機關이든 政府機關이든, 養子, 養親, 生父母의 福祉와 欲求充足과 所願成就의 使命을 도맡은 것이며, 그들의 將次의 運命을 左右하는 神의 決斷을 代行하는 人間 以上の 一種의 聖스러운 任務를 갖는 存在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지난 21年間の 筆者의 入養機關長으로서의 責務는 매우 무거웠으며, 그 責務에 對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다.

入養이 이러한 特殊한 社會福祉프로그램이어서 또 福祉프로그램보다 이에 關聯된

*본 글은 사회사업 실무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논단임을 본문 중에 밝히고 있다.

社會事業家の責任이 무거운 뿐 아니라, 매우 專門的인 知識과 訓練이 必要하다. 그러나 大學에서의 入養에 關한 教育은 未洽한 印象이고, 入養의 現場에서 活動하는 社會事業家 中에도 入養의 本是를 저버리고 脫線하는 것이 눈에 띄어 걱정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不幸한 事情으로 社會福祉 現場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筆者로서는 恨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社會福祉 現場에의 復歸는 期約이 없기 때문에 지난 20年間 現場에서 배우고 또 體驗한 것들을 모아 入養에 關한 理解를 높이는 資料로서 紹介하고자 한다. 이 資料를 紹介하는 韓國社會福祉學會 學會誌가 專門誌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學術的인 原稿가 아니더라도 歡迎한다는 學會側의 好意에 感謝하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기로 하였다. 讀者 諸位의 깊은 理解와 雅量을 바라며, 이 資料가 우리 나라 入養事業 水準向上에 一助가 된다면, 筆者로서는 그 以上の 기쁨이 없을 것이다.

I. 늘어가는 入養의 世界的 關心

1. Adoptive Country와 Placing Country

地球村이 現代化하고 있는 때문에 入養의 樣相도 傳統的인 形式을 벗어나 새로운 時代에 알맞는 內容과 形式으로 變해가고 있다. 特히 第2次 世界大戰이 地球村의 東西에 悽慘한 不幸을 招來한 만큼, 入養은 그 人間不幸의 治療藥의 하나로 登場하였으며, 國際協助의 度가 질어감에 따라 入養도 그 現場이 國內에 局限되지 않고, 國際的인 活動으로 그 規模가 擴大되었다. 例를 들면, 外國의 兒童을 入養하는 養親의 나라(Adoptive Country)가¹⁾ 約 15個國이나 되며, 入養을 外國에 보내는 兒童의 나라(Placing Country)도 Asia 및 中南美 諸國을 비롯하여 그 數가 40個 內外나 된다.²⁾

Adoptive Country나 Placing country가 모두 入養에 關하여 큰 關心을 갖는 것은 나뉠대로의 그 背景이 있다. 西歐社會를 支配하고 있는 白人들의 最近의 一般的인 傾向은 核家族化되어 가는데다가 高所得에 反하여 社會的 또는 肉體的 負擔을 되도록이면 적게 갖기 爲하여 子女를 많이 갖기를 願치 않으며, 結婚婦人의 10% 內至 15%가³⁾ 子女를 妊娠하지 못한다. 白人에게 比較的 많은 RH-型 血液을 갖는 夫婦는 妊娠하지 못하든가, 妊娠이 되더라도 死産하는 境遇가 많은 것이라는 說도 있다.

이같은 事情에서 西歐社會의 子女를 갖지 못하는 夫婦들은 兒童을 養育하기를 바

라게 된다. 그러나 이들 國家에서는 所得이 높기 때문에 貧困으로 子女를 遺棄하거나 親權을 拋棄하는 例가 極히 드물며, 未婚母에게서 태어난 아기들도 相對方이 扶養責任을 지든가, 政府가 保護하는 등 社會가 그들을 受容하기 때문에 自國內에서 兒童을 入養하기는 매우 힘들다.

勿論, 黑人系 兒童들로서 養父母를 찾아 주어야 할 兒童들이 많기는 하나, 白人系 養父母들은 黑人을 忌避하는 人種差別에서, 黑人社會 指導者나 社會事業家들은 白人에 對한 反感과 黑人兒童이 入養된 後 差別받는 것을 優慮하는 생각에서, 兩側이 모두 黑人系 兒童의 白人家庭에의 入養의 길을 닫고 있다. 한편 西歐社會에서도 入養되는 白人系 兒童이 없지 않으나 그 數가 아주 적으며, 그러한 아기를 入養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함은 勿論, 莫大한 金額의 費用을 支出하여야 하고, 生母의 變心 등으로 入養 後 골치아픈 法廷問題까지 야기될 優慮가 있기 때문에 不安한 것이다.

2. 西歐社會의 國內入養 減少趨勢와 外國兒童에 對한 關心

西歐社會의 國內入養은 以上과 같은 理由로 크게 줄어가고 있는 反面, 海外로부터 兒童을 入養하는 數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例를 들자면 Sweden에 있어서는 아래 表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28년부터 1965年 Sweden에서 태어난 兒童이 年間 最少限 900名부터 3,600名 程度가 國內家庭에 入養되었다. 그러나 그 後 漸次 減少되어 近年에는 年間 15-20名 程度밖에⁵⁾ 되지 않을 程度로 大幅減少 되고 말았다.⁶⁾

Sweden兒童의 入養數

年度	兒童數
1928年	900名
1935年	1,000名
1947年	3,600名
1957年	2,000名
1965年	1,000名

Netherlands를 또한 例로 든다면, Netherlands에서는 그 나라 兒童의 入養數가⁷⁾ 1970年의 747名으로부터 繼續해서 減少, 1985年의 60名으로 減少되었고, 反對로 非 Europe系 兒童의 數는 同期間 中 約 8倍로 늘어났다.

美國家庭에 關한 關心이 얼마나 큰가에 對하여는 아래 表의 入養兒童數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나, 州에 따라 入養數를 公開하지 않는 州이 있어 實際의 入養數는 아래 表의 數字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表의 入養兒童數에는 國內入

入養兒童의 變化趨勢

Dutch 兒童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Europe系 兒童	747	568	396	328	214	171	157	142	144	143	104	99	77	66	63	60
非Europe系 兒童	?	?	?	89	154	150	108	71	37	20	19	6	4	12	9	3
	142	159	203	225	465	865	1,017	1,034	1,174	1,267	1,575	1,155	1,041	1,353	1,099	1,134

養 및 海外兒童의 入養이 包含되어 있으며, 1972~73 會計年度에 있어서 海外로부터 入養된 兒童數는 全體 入養數의 33%로 推算하는 報告이기에, 當時의 國內入養數는 매우 컸었다.

1957	1960	1970	1970
91,000名	107,000名	174,000名	174,000名

西歐社會의 養父母들이 Asia나 中南美地域國家의 兒童에 對한 入養關心을 갖게 된 것은 自國內에서 兒童을 入養하기 어려운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美國家族이 1948년부터 1962年 間에 1,845名의 獨逸兒童과 2,987名의 日本兒童 및 840名의 中國兒童을 入養한 것은 Sweden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戰爭孤兒의 救護라는 人道主義的 精神도 결들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들 兒童들 中 美國兵士들과 駐屯地 女性들 사이에서 태어난 混血兒들을 入養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로서의 道義的 責任感에서 取해진 일이라고 解釋해도 無妨할 것이다.

3. 우리 나라의 國內入養

入養에 關한 關心이 커가는 傾向은 西歐社會에만 局限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와 같이 産業社會化 過程이 매우 빠른 나라에 있어서는 西歐社會와 거의 같은 理由에서 國內入養의 關心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 한편 急激한 産業社會化 過程에 適應해 가지 못하는 韓國社會는 未婚母의 問題라든가 嬰兒遺棄, 家出兒童의 問題 等이 深刻하기 때문에 西歐社會에 있어서와 같이 入養될 兒童을 찾기 어려운 問題는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國內入養이 入養을 바라는 養父母가 많은데도 不振한 理由는 우리 社會의 入養에 對한 思考가 빠른 速度의 産業社會化 過程을 따르지 못하고, 舊態依然한 傳統的 入養의 姿勢를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 國內入養에 있어서 主된 入養對象兒童은 같은 氏族內的 兒童이 아니라 緣故없는 兒童, 例를 들어 未婚母가 親權拋棄한 婚外子(女)라든가 棄兒

나 施設에서 保護받고 있는 兒童들이다. 우리 나라 養父母가 姓이 다른 無緣故 兒童을 養子로 받아들이는 것은 入養史에 있어서 刮目할 만한 큰 變化이다. 그러나 養子選定에 있어서 男兒, 갓난아기, 심지어는 養父母와 같은 系列의 血液型 兒童을 찾는 것은 入養에 關한 思考가 現代化하지 못하고, 養父母가 氏族保存을 目的으로 하는 氏族中心의 入養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證據라고도 할 수 있겠다.

II. 多様な 入養對象 兒童의 類型

入養되는 兒童은 他意에 依하여 入養되는 것이 特色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入養됨에 있어서 어떠한 社會的 또는 法律的 狀態에 있는 것도 自意나 自己決定에 依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들을 낳은 父母나 保護하는 사람들에 依하여 決定된다.

1. 戰爭孤兒

우리 나라의 現代的 入養이 始作된 1950年代는 戰爭으로 많은 孤兒가 생겼고, 慘酷한 戰禍를 입고 있는 우리 政府나 國民은 그들을 돌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 나라 兒童은 戰爭孤兒라는 이름으로 1954년부터 海外家庭에 入養되었다. 前衛한 바와 같이 美國 家庭이 第2次大戰 後에 日本, 獨逸, 中國으로 부터 入養한 兒童들이나, Vietnam戰爭 때 그 나라에서 入養한 兒童들도 그 大部分이 戰爭孤兒이었다. 戰爭孤兒가 戰爭中, 外國家庭에 入養되는 境遇는 그들의 入養手續에 있어서 專門的인 入養機關의 關與가 없는 때가 많은 것이 特色이며, 이 때문에 入養에 法律的인 瑕疵가 많은 例가 많다. 越南戰이 終熄될 무렵, 越南으로부터 徹收하는 美軍이 越南避難民의 많은 子女를 緊急避難이라는 名目으로 美軍艦船이나 航空機로 美國本土로 輸送하였고, 이들을 美國家庭에 入養시킨 일이 있었다. 그러나 國際社會는 이같은 美軍의 緊急避難措置를 善意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動機를 疑心하여 非難하는 소리도 높았고, 한편 子女를 잃은 越南避難民은 避難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子女를 찾아나섰고, 美國의 養父母는 情들여 키우던 養子와 헤어지는 슬픔을 겪어야 했다.

1950年代初의 우리 나라 戰爭孤兒, 그들은 只今 30대를 넘은 壯年들이다. 그 大部分은 收容施設에서 保護를 받았으며, 이제는 子女와 職業을 갖는 市民生活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戰爭孤兒 中에는 그러한 保護도 못받고 이슬처

럼 이 世上에서 떠난 數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2. 混血兒

6. 25戰爭 後부터 1980年代初 孤兒와 더불어 主로 美國家庭에 入養되는 兒童들이 있다. 「混血兒」들이다. 人種의 異質性 때문에, 그리고 그들 生母의 大部分이 外國人들을 相對로 하는 淪落女性이라는 데서 우리 國民들로부터 疎外當함으로써 國內에서 適應하거나 定着하기 어려워서 그들 아버지의 나라 政府나 國民의 關心事가 되어 入養對象 兒童이 된 것이다. 白人系 混血兒는 黑人系 混血兒보다 덜 疎外받는다. 어떤 白人系 混血兒는 成長함에 따라 그들 아버지 나라를 背景으로 韓人兒童이나 韓國國民에 對한 優越感까지 갖기도 한다. 그러나 黑人系 混血兒인 境遇는 그렇지 않다. 美國系 混血兒들이 아버지 나라 美國에서 보다 잘 適應할 것이라는 것은 一般論이다. 年長 混血兒가 國內에서 잘 適應하지를 못하여 무척이나 애써가면서 美國社會에 入養시킨 적이 있었는데 美國에서도 매우 많은 適應問題가 繼續되었다. 그들이 태어난 時의 情況, 그리고 그들을 疎外했던 韓國社會 등을 살핀다면 그들이 韓國社會에서 順調롭게 成長되기를 바라기 어려울 것이다. 人種의 異質性 때문에 他國에 入養된 例는 Europe에도 있었다. 西獨에 駐屯한 美軍黑人兵士와 獨逸女性사이에서 태어난 黑人系 混血兒가 人種差別이 덜한 Sweden에 入養되었던 일이다. 이들 兒童들이 白人系나 黑人系의 混血로 태어난 것 亦是 그들의 決定에 依한 것이 아니며, 美國이나 Sweden으로 入養된 것 亦是 他意에 依한 것이다. 韓國에 混血兒가 없는 것은 아니나, 1983年頃, 美國政府가 Asia 地域의 美國系 混血人(Amerasian)들의 福祉를 위하여 그들의 移民에 關한 特別法「Amerasian Immigration Law」을 制定한 後로는 그 美國에로의 移民節次가 매우 까다롭기는 해도 入養機關을 通하지 않고, 美國의 Sponsor를 찾아 이 길을 擇한다. 이 새 法에 依하면, 移民가는 混血兒의 年令의 制限이 없으며(美國市民의 子女임이 確實하기만 하면) 그 配偶者나 子女까지도 移民갈 수 있는 길이 트였기 때문에 混血兒나 그 生母가 이를 선호한다. 國內에서는 Pearl S. Buck 財團이나, 美國系 宗教團體가 이 프로그램에 關與, 續極 後援하기 때문에 그들의 入養은 極少數에 지나지 않는다.

3. 施設兒童

施設兒童도 入養對象 兒童의 類型의 하나이다. 保護施設에 收容되는 兒童들을 孤

兒로 通稱하고 있으나, 그 中에는 孤兒도 있을 것이고 迷兒, 棄兒, 家出兒 또는 浮浪兒 그리고 例外的이기는 하나 混血兒도 收容保護되어 「孤兒」 또는 「施設兒童」으로 通稱되며, 그 中 一部가 施設長을 通하여 外國家庭에 入養되거나, 海外入養機關을 通하여 外國家庭에 入養된다. 施設兒童의 入養이 本格化한 것은 軍事革命政府 때 부터이다. 政府는 「兒童은 家庭에서 養育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社會事業의 理論을 導入하여 이러한 政策을 採擇하였으며, 이 政策을 強力히 推進한 結果, 1960年代에 約 60,000名이 施設에 收容保護를 받았던 것이 1980年代初에는 約 2,300名代로 減少하게 되었으며 施設에서 入養되는 兒童의 數도 過去에 比하여 적어지고 있다. 施設兒童을 外援機關이 援助할 때의 일이다. 外國後援者와 施設兒童을 個別的으로 結緣시켜 그 外國後援者의 後援金을 施設兒童의 養育費 등으로 使用하는 것이 때문에 健康하고 잘 생긴 兒童을 뽑아 外援機關에 推薦하여 援助를 받는다. 때문에 이들은 入養對象에서 除外되고 後援者와 結緣되지 않은 兒童들이 入養對象이 된다. 後援者가 있는 兒童들은 施設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예쁘지 않고 健康이 結緣兒童에 比하여 좋지 않은 兒童이 養父母家庭으로 入養되는 機會를 갖는다. 適者生存이니 하는 말이 있지만 이 境遇에는 劣者들이 養父母家庭으로 옮겨가는 祝福을 받게 되고, 優者는 施設에 그대로 남게 되는 運命이 된다. 이 또한 第三者들이 兒童의 將來를 左右하는 逆說的인 例이다.

4. 棄 兒

1960年代부터 1970年代末 「棄兒」가 入養의 主된 對象이 되었다. 1964년에 全國 棄兒數는 11,000名이 넘었었다. 이 數字는 政府가 棄兒數를 對外的으로 發表한 年度別 棄兒數 中 가장 많았던 해의 統計다. 1962년부터 始作한 政府의 家族計劃事業은 社會的 安定이라든가 經濟成長과 더불어 棄兒數의 增加를 抑制하였을 뿐 아니라 減少시키는 데 크게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因하여 1960年代末부터 1973年 油類波動以前 數는 約 5,000名 乃至 6,000名線으로 묶이어 있었다. 家族計畫事業은 願하지 않은 兒童을 避妊하거나 妊娠中絶하는 方法을 가르쳐 줌으로써 遺棄할 兒童을 源泉的으로 이 世上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社會的 安定이나 經濟的 成長은 貧困 등으로 子女扶養을 拋棄하는 傾向을 弱화시켰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性道德이 紊亂해지는 것을 抑制하는 努力은 우리 社會에 없었으며, 經濟成長이 貧困層의 經濟生活 向上에 크게 影響을 미칠 政策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棄兒數가 더 減少되지 못했던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 油類波動은 庶民層의 生活에도 衝擊이 컸었던 모양인지, 1974년부터 全國의 棄兒數는 每年 경증경증 뛰어 올랐다.

그러나 그 數字를 政府에서 發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으나 1970年代末頃에는 10,000名線 内外가 되지 않았나 하는 感이 들었다. 地球村에는 어쩌다가 몇해만에 棄兒라도 한 명이 發生하면 그 나라 全體뿐 아니라 그 地域周邊國家들의 言論媒體까지 떠들석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南美의 어느 나라는 그 나라 首都에서 發生하는 數만 해도 우리 나라 全國에서 發生하는 棄兒數보다도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 많은 棄兒 發生에 對해 우리가 自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마는 棄兒가 全無한 나라에 比하면, 부끄러운 現像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인가 어디에 크게 잘못된 데가 있는 것이다. 棄兒와 迷兒를 分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걸어다니지 못하는 아기일 경우 棄兒일 確率이 높고, 걸어다니는 아기일 때에는 迷兒일 수도 있다. 그러나 5~6歲되는 아동으로서 迷兒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그 兒童의 말을 들어보면 保護者가 驛前이나 市場等 사람이 많은 곳에 自己를 남겨놓고 逃亡치고 말았다고 하는 例를 보면, 큰 兒童을 유기하는 경우가 있음이 틀림없다. 어린이를 發見한 場所等 狀況으로 보아 棄兒임에 틀림없는데도 父母가 찾으러 와서 버렸다고 正直하게 告白하는 일은 거의 없다. 嬰兒 遺棄의 原因에 對하여 調查資料로서 統計가 報告되는 例를 때때로 본다. 그러나 것처럼 엉터리같은 調查報告가 또 어디 있으랴? 遺棄하는 사람을 찾아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遺棄된 아기들이 왜 버려졌는지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未婚母나 離婚, 受刑等 父母의 社會的인 問題, 父母의 經濟的 貧困 또는 父母나 兒童이 不具이거나 治療可望이 없는 疾病에 걸려 있기 때문에 兒童을 遺棄했을 것이라고 推測을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狀況을 綜合해서 그 中 社會的 問題로 버리는 數가 많을 것이라는 느낌을 現場의 社會事業家는 가질 수 있을 뿐이다.

5. 親權을 拋棄한 兒童

父母가 子女를 扶養할 수 없어 버릴 境遇 棄兒가 생긴다. 그러나 社會事業機關의 相談을 通하여 保護를 依賴한 境遇가 있다. 이때 子女에 對한 權限一切를 拋棄하면서 保護를 依賴하는 것과 保護를 委託하는 것이 있다. 前者의 境遇의 兒童은 入養對象이 될 수 있으나, 後者の 兒童은 施設保護나 家族委託保護는 可能하나 入養對象兒는 될 수 없다. 法律專門家에 依하면 「親權拋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入養에 關한 現場에서는 흔히 이러한 用語를 便宜上 使用하고 있다. 「親權拋棄」에 依한 入養對象 兒童으로서는 未婚母에게서 태어난 婚外子, 貧困, 離婚等으로 既婚父母의 품을 떠나는 兒童이 있겠으며, 混血兒의 境遇는 未婚母에게서 태어난 婚外子の 境遇와 그 性格이 같으나, 다만 兒童의 人種的 背景이 白人系 또는 黑人

系 混血兒라는 差異가 있을 뿐이다. 「親權拋棄 兒童」이 되는 節次로서 親父母의 入養同意와 아울러 扶養에 關한 權利를 一切 拋棄한다는 文書를 받아 入養機關의 長이 後見人이 되는 法的 節次를 밟는다. 그러나 父母가 이러한 節次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 決定을 뒤엎어 親權拋棄한 兒童을 돌려 달라고 強要할 때에는 누구도 이를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親權拋棄된 兒童」이 合法的인 節次를 밟아 海外家庭에 入養되어 이미 韓國을 떠났을 境遇에는 入養手續에 커다란 瑕疵가 없는 限, 入養된 兒童을 되 돌려 받기란 거의 不可能하다. 왜냐하면 韓國의 法院은 管轄地域 밖에 있는 外國의 養父母와 入養된 兒童을 裁判할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境遇에는 養父母의 返還同意만이 이를 解決할 수 있는 길이기는 하지만 法律을 尊重하고 合理的 思考가 一般화된 西歐社會의 養父母가 手續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親父母의 呼訴를 받아들여 養子를 되돌려준 例를 지난 20年間의 現場勤務期間 中 단 한 件도 본 일이 없다. 그러나 國內入養에 있어서는 養父母나 入養된 兒童을 保護하는 法律의 未備로 親權拋棄한 生父母가 兒童의 返還을 기를 쓰고 強要할 때 一般國民의 人情과 言論媒體는 入養手續이 아무런 缺陷없이 취해졌는데도 生父母便을 支持하는 例가 10년에 한 두 件 程度는 있었던 것으로 記憶된다. 이러한 韓國社會의 傾向은 國內入養을 하고자 하는 養父母의 入養意思決定을 매우 망설이게 하는 要因이 되는 것이다. 「親權拋棄된 兒童」의 性格이 이와 같은데도 近年에 이르러 大韓社會福社會의 資料에 依하면 아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入養對象兒童의 類型 中 가장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入養對象으로 面接한 兒童의 背景

年度	棄兒	施設兒	親權抱棄兒
1979	18.5%	31.0%	50.5%
1980	16.9%	27.7%	55.4%
1981	17.2%	24.4%	58.4%
1982	19.9%	36.1%	44.4%
1983	11.9%	22.8%	65.3%
1984	12.7%	23.9%	63.4%
平均	16.2%	27.7%	56.1%

6. 婚外子

現代的 入養의 主된 對象兒童이 「無緣故兒童」이라는 것을 이미 說明한 바 있다. 그러나 西歐社會에 있어서 義父母에 依하여 婚外子(의붓 子女)들이 入養되는 數가

많아지고 있어 注目을 끌고 있다. 離婚率이 높은 西歐社會에서 그들이 再婚할 때 前配偶者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子女를 入養한 子女로 取扱하여 한 家族이 되는 것이다. 再婚한 夫婦中 한쪽에게는 親生子女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쪽 配偶者에게는 緣故가 없는 것이기는 하나, 西歐社會에서는 이를 「緣故兒童」(Relative Children)의 테두리에 넣어 「無緣故兒童」(Non-Relative Children)의 入養과 그 性格을 區分하고 있다. Netherlands에 있어서는 緣故兒童中 義父母에 依한 入養件數가 年間約 500名이 되는 것으로 報告되었고, 英國에 있어서는 1962년에 4,250名이 義父母家庭에 入養되어 國內入養의 25%의 比率를 차지했던 것이, 1974년에는 14,835名으로 늘어나 國內入養의 66%를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도 現代化傾向에 따라 離婚率이 漸次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前配偶者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兒童을 再婚할 때 어떤 形式을 取하여야 그들의 權益을 害치지 않을 것인지에 關하여 研究하여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婚外子(女)가 이러한 狀況에서 入養되는 時의 年齡은 無緣故兒童이 入養되는 時의 年齡에 比하여 훨씬 높다는 것이 特徵이다. 이 때문에 이들 感受性이 敏感한 養子들이 養父母家庭에서 잘 適應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離婚은 그래서 夫婦만의 不幸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子女들은 父母들이 저지른 不幸으로 因하여 養夫母의 家庭에서 養子の 資格으로 어두운 新生活을 始作해야 하는 것이다.

7. 人工的 受胎에 依한 兒童

現代醫學의 發達로 人工的 受胎가 可能하게 되자 子女없는 夫婦가 입양을 하지 않고 子女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Netherlands의 한 學者는 人工的 受精에 依하여 子女를 갖는 이 方法을 「Concealed Adoption」(은폐된 입양)이라고 벌써 呼稱하였고, Sweden에서는 “The Act of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ar”라는 法律을 1985년에 制定하였다. 이 法律의 內容에는 「隱蔽된 입양」에 있어서 「精자를 기증한 사람」과 「人工受精에 依하여 아기를 갖게 된 夫婦」 그리고 「精자의 기증者」와 「그 精자로 世上에 태어난 아기」間에 앞으로 法律上의 問題가 生길 可能性이 있음을 前提하고 있다고 한다. 特히 興味있는 點은 이 法律은 「人工受精에 依하여 태어난 兒童」은 適切한 時期에 「精자를 기증한 “生理學的인 아버지”(Biological Father)」의 姓名이나 그의 「生物的 data」(Biodata)를 알 權利를 갖도록 規定하는 한편, 「Biological Father」에 對하여는 自己가 精자를 기증한 事實에 關한 秘密을 自己平生 지켜주도록 要求할 權利를 賦與하지 않았다는 點이다. 이 法律의 全貌를 알고 있지 않으나 그 一部分의 內容을 接하고서 느낀 바는, 現代醫學의 驚異로운 發達이

「人間生命의 深奧한 境地」에까지 接近하고 있으나, 그 科學의 힘이 人間生命의 險巖性을 짓밟고 人間關係를 멩들게 하여 人間의 不幸을 克服하는 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더욱 不幸하게 만들 뿐 아니라 人間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는 結果를 招來하지 아니할까 우려되는 바 크다. 「寄贈받은 精子로 受胎한 女性」과 「精자를 寄贈한 男子」와의 關係, 그리고 이 兩者와 「法律上的 男便」일 뿐, 아기를 生産할 수 없는 「男性과의 三者間의 매우 微妙한 人間으로서의 相互關係, 「精자를 寄贈한 男子」와 「法律上的 아버지인 男子」에 對한 「人工受精에 依하여 태어난 아기」의 人間距離의 長短 또는 濃度の 差異 等等 우리 人間이 史上 일찌기 體驗도 想像도 하지 못했던 엄청나고 深刻한 問題가 人間世界에 必야호로 定着한 것과 같은 一種의 恐怖같은 것을 느낀다. 人間이 이 「人工受精에 依한 受胎」를 「새로운 形態의 入養」으로 생각하든 말든 子女얻는 方法의 하나로 採擇하여 받아들인 것만은 事實이다. 이 「Concealed Adoption」을 앞으로 人間이 얼마나 利用할 것인지는 모르나 入養의 새로운 類型으로 例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紹介하면서 社會事業學界나 現場의 關心을 促求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 政府도 豫見되는 將來에 對策하여 이에 關한 制度를 마련할 準備가 必要한 것으로 생각된다.

8. Special needs children

入養對象 兒童들은 그들 父母의 社會的 經濟的 與件이 좋지 않은 만큼, 健康狀態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들 自身이 心身障礙이든가 疾病에 걸려 있어 遺棄되는 수도 있다. 大韓社會福祉會의 資料에 依하면 棄兒 中 34%(障礙 7.2%, 未熟 6.5%, 疾病 20.3%)가 緊急히 治療를 받거나 再活이 必要한 健康狀態이었다. 同 入養機關은 保護兒童에 對하여 「年間外來治療 平均 12,332回, 入院治療 平均 255名, 年間負擔治療費 平均 45,483,480원」의 治療를 하였다.⁸⁾ 入養事業에 있어서 社會事業界가 看過하기 쉬운 問題가 바로 이 點이다. 그리고 海外入養機關의 눈에 나타나지 않은 功이 있다면 바로 이 點이고 또 海外入養機關이 아니고서는 危急한 狀態에 있는 兒童들을 治療할 財源이 어느 民間福祉機關에도 없다. 따라서 入養機關의 第1次的 使命은 病弱한 아기들의 生命을 于先 救出하는 일이다. 事實이 아니기를 바라지마는 海外入養機關 中에 打算을 考慮하여 棄兒中 健康한 兒童만 選別하고 「病弱한 兒童과 障礙兒童」의 保護를 忌避하는 例가 있다고 한다. 萬一 그것이 事實이라면, 兒童福祉의 根本的 倫理를 破棄하는 社會事業機關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1986年부터 모든 棄兒는 政府管理下에 一單 收容保護施設에 保護되었다가 一定期間 後 保護者가 나타나지 않은 兒童을 入養對象兒로 許容한다는 것으로 듣고 있다. 棄兒

中 1,000名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迷兒가 있을지 몰라 取한 措置라는 바, 걱정스러운 것은 棄兒 中 34%나 되는 「病弱兒, 未熟兒 또는 障礙兒」들이 새로운 節次 밑에서 適切한 保護를 받지 못하여 얼마나 알게 또는 모르는 사이에 죽거나 苦生할까라는 점이다." 一部 西歐社會에서는 病弱兒를 "Speical needs children" 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入養시키는데 各別한 關心을 쏟고 있다. 이는 純粹한 人道的 사랑을 根幹으로 하는 것이며, 英國에서는 入養에 있어서의 한 革命이라고 까지 부르고 있다. 美國에서도 Minnesota에 있는 PACT(Partners Aid Children's Today)가 越南의 障礙兒를 돕다가 越南戰後, 1973년부터 大韓社會福祉會를 통하여 이 프로그램을 展開하였으며, 心臟病兒童을 美國으로 보내 無料手術을 받게 하는 것도 이같은 精神 밑에서 施行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社會도 이러한 兒童들을 外面하지 말고 積極적으로 돌보고, 또 治療나 再活後 養父母家庭을 찾아주는 入養의 革命이 일기를 懇切한 마음으로 所望한다.

III. 養父母의 選擇과 海外入養에 對한 贊反

1. 養父母의 選擇

夫婦 中 自己 子女를 갖지 못하는 家庭이 있는 것은 子女를 갖는 夫婦가 自己 子女를 스스로 養育하지 못하는 것과 아울러 入養을 可能하게 하는 大前提가 된다. 入養에 있어서도 需要와 供給의 原理가 強하게 作用하고 있는 것을 現場에서는 느낄 수가 있다. 例를 들어 饑饉으로 數萬의 어린이가 飢餓線上에 있어도 그들을 入養하는 養父母가 없을 경우, 그들을 救할 길이 없다. 養父母數는 적는데 入養시켜야 할 棄兒가 많은 境遇, 入養 後의 兒童의 安全과 福祉를 爲하여 最善해야 할 養父母의 審査가 疏忽해질 可能性이 많다. 反對로 기다리는 養父母가 많은데, 入養시킬 兒童이 많지 않을 境遇, 入養機關은 養父母를 嚴選하여 좋은 家庭을 찾을 수가 있다. 政府의 入養政策如何에 따라 養父母選擇이 左右되는 經驗도 現場에는 있었다. 政府가 國內入養을 勸獎하기 위하여 民間機關에 年間 入養目標量을 指示하고, 그 成果에 따라 海外入養 許可數가 左右될 때에는 國內養父母 家庭調査를 徹底히 하여 좋은 養父母를 選擇하지 못하고, 不適格하다고 생각되는 家庭에도 入養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딱한 例도 없지 않았다.

現代的 入養은 政府가 公認한 機關에 依하여 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이며, 이를 흔히 Agency Adoption이라고 社會事業界에서는 부르고 있다. 그러나 入養에 政府가

直接 入養實務에 關與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各市·郡 等の 公務員이 國內入養實務를 맡고 있다. 이같은 例는 西歐社會에 있어도 볼 수 있다. 入養을 健全케 하기 위하여는 公認된 機關이 이를 擔當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公認된 入養機關에 依하지 않는 入養의 例가 家門內에서 行해지는 傳統的 入養外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外國에 있어서는 神父나 聖職者, 醫師, 看護員 또는 辯護士에 依하여 入養되는 例가 있다. 社會事業界에서는 이를 「Independent Adoption」이라고 부르는데, 나라에 따라서 法이나 制度的으로 이를 許容하는 곳도 있고, 法으로 禁하고 있으나 不法的으로 어떤 個人이 入養周旋을 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入養特例法에 依하여 禁止되어 있는데도 個人이 國內入養을 周旋하는 例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養父母에 따라 Independent Adoption을 選好하는 傾向이 있는 것은 入養機關보다 入養이 빠르고, 費用이 적게 드는 경우가 있으며, 大概의 경우 法的手續이 省略되어 秘密을 維持할 수 있는 利點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第2次大戰 後, 現代的 入養이 普遍化되고 專門化 되어감에 따라 Independent Adoption은 漸次 자취를 감추어 가든가 또는 法으로 禁止하는 傾向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國際入養에 있어서 西歐社會에는 入養實務를 民間機關에 委任하고 監督과 入養行政을 政府가 맡는(例: Sweden, 西獨) 二元化된 類型과 民間·政府機關이 共히 擔當하는 類型(例: 美國)과 政府가 全的으로 擔當하는 類型(例: Canada의 Qubec州)으로 나눌 수 있겠다.

海外入養의 境遇에는 兒童의 나라에 있는 入養機關이 養父母家庭을 調査하거나 入養 後 兒童의 適應狀況을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國內機關과 海外機關이 業務에 關한 約定을 締結하여 우리 政府의 承認을 얻는다. 우리 政府는 海外入養을 抑制하기 위하여 1970年代 中盤期에 入養對象國 數를 凍結하는 한편, 外國의 入養機關이 韓國의 여러 入養機關과 入養周旋을 가능한 限 重複하지 않도록 統制하고 있다. 한편 大韓民國과 國交를 갖는 自由友邦에 限하여 우리 兒童의 入養을 許容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入養政策에 있어서는 養父母의 宗教에 對하여는 아무런 制限이 없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養父母의 宗教를 制限하는 例가 있다. India의 경우, 養父母는 Hindus, Sikhs 및 Jains에 局限되며, Muslims, Christians, Parsees나 Jews의 入養은 禁止되어 있다.¹⁰⁾

海外入養의 경우, 大概의 養父母는 白人系이며 若干의 東洋系 養父母와 黑人系 養父母 家庭에도 入養된다. 入養되는 兒童이 人種이 다른 養父母家庭에 入養되는 것은 社會복지界에서는 “Trans Racial Adoption”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 兒童이 白人系 또는 黑人系 家庭에 入養되는 것은 “Trans-Racial Adoption”이라 性 格지을 수 있겠다. 우리 나라 入養 特例法에는 養父母의 人種問題에 對해서 아무

런 規程이 없다. 그러나 筆者는 入養機關의 責任을 지고 있는 동안 偏狹스러운 생각이었는지 모르나, 나름대로의 視角에서 不文律的인 두 가지 制限을 固守해 왔었다. 그 하나는 混血兒 黑人兒童이 아닌 純韓國系 兒童을 夫婦가 모두 黑人系인 養父母 家庭에 入養시키지 않았고, 또 다른 하나는 夫婦가 모두 日本系 1世인 家庭에 入養시키지 않았다. 前者의 경우에는 人種的 視角이기는 하나, 筆者 自身이 黑人을 差別한다기보다는 入養된 純韓國系 養子가 成長한 後, 黑人 家庭에 適應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과, 그를 黑人 家庭에 入養시킨 入養機關과 祖國에 對한 怨望이 매우 크리라는 理由에서 取한 것이었다. 後者는 日本 1世이기에 人種적 視角에서가 아니라, 日本人의 韓國人에 對한 民族差別을 前提로 兒童이 或은 있을지도 모를 虐待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豫防措置로 取해진 것이었다. 이 두 類型의 養父母로부터 入養 申請을 받게 되면, 拒絕하는 참뜻을 說明하지 못하여 困難한 때가 있었으나, 이쪽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노라면, 스스로 撤回하고 말기 마련이었다.

養親으로서 獨身者가 入養하는 것을 美國은 許容하고 있다. 美國도 數年 前까지만도 州에 따라 獨身者가 入養하는 것을 許可하지 않은 곳도 있었으나, 入養을 希望하는 獨身女들의 끈질긴 立法活動을 通하여 聯邦法으로 이를 許容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入養特例法에 明文으로 禁止하고 있지는 않으나 “合法的으로 結婚한 夫婦”라는 表現으로 獨身者의 入養을 排除하고 있다. 이 같은 政策은 國內에서 不遇한 兒童이 偏親만 있는 家庭에 入養되어 半 쪽 사랑만 받게 되는 일이 없게 하는 한편, 偏親의 事故나 死亡으로 다시 孤兒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配慮에서 取해진 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盲兒나 障 礙兒 등이 보호施設에 受容되어 있을 경우에는, 外國의 獨身女로서 盲兒學校 教師이든가 再活施設 專門人인 경우에는 그 나라 入養機關에 依한 家庭調查에 合格하면 우리 政府에 特別히 請願하여 入養을 보내는 例外가 있기도 하다.

우리 政府의 行政指針으로 養父母의 年齡을 滿25歲 以上 滿45歲 以下로 制限하고, 結婚生活 3年 以上の 夫婦로 規程하고 있다. 이는 國內入養이나 海外入養에 모두 適用하고 있다. 養父母 年齡의 下限線을 25歲 以上으로 한 것은 養父母로서 社會的 또는 經濟的 基盤이 잡혀 있는 것을 期待하는 한편, 人間으로서 어느 程度 成熟되어 있는 養父母를 찾기 위한 配慮에서이며 年齡의 上限線을 45歲로 묶은 것은 養子の 成長過程에 있어서 潑刺한 父母의 養育을 받음으로써 養子가 持續적으로 健全하게 자라도록 하려는 意圖에서 取해진 措置이다. 그러나 養父母로서 他 資格基準에 잘 맞으면 年齡의 上限線을 若干 넘는 養父母일지라도 政府의 特別한 配慮를 請願하여 入養할 수 있게 하는 例外가 있다. 養父母의 結婚生活 期間은 3年 以上으로 한 것은 그 期間 동안 自身들의 子女生産을 힘써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最少限 3年 以上 圓滿한 夫婦生活을 하였다면 大體로 圓滿한 夫婦 關係임을 周邊 사람들의 視角도 물어 判斷할 수 있을 것이라는 視角에서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理由는 國內駐屯 美國兵士들이 駐屯期間(大體로 1年間) 中 韓國女性和 國際結婚하여 本國에 돌아가기 前에 韓國에서 入養하려는 傾向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國際結婚의 離婚率이 約 70% 以上인 것으로 報告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入養을 받아들일 경우, 離婚後 우리 兒童들이 다시 不幸해질 可能性이 濃厚한 것으로 判斷되었기 때문에 筆者는 10余年 前 政府에 이를 건의하였다. 政府에서 기꺼이 採擇하여 주었다. 만약 政府의 이러한 文書화된 規定이 없다면 우리 入養機關의 社會事業家の 힘으로는 그들의 入養 申請을 拒絶하기가 매우 힘든 일이 된다.

2. 海外入養에 對한 贊反

海外入養(Overseas Adoption)을 “Intercountry Adoption”이라고도 한다. 海外入養에 對한 贊反論에 對하여 살피기 위하여는 海外入養이라는 表現보다 「國家間의 入養」 또는 「國際入養」이라고 表現하여 그 性格을 밝혀두는 것이 便利할 것 같다. 우리 나라의 “Intercountry Adoption”은 그 大部分이 같은 人種間의 入養이 아니라 前述한 바 있는 “Trans-Racial Adoption”의 性格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우리 나라 文化와 다른 文化圈의 家庭에 入養을 시키는 “Intercultural Adoption”의 性格을 찾아볼 수 있으며, 셋째, 우리보다 富裕한 나라들의 家庭에 入養시키고 있는 것이 또 다른 特色이다.

海外入養을 反對하는 主張은 우리 나라 兒童들을 人種과 文化가 다른 나라에 入養시키는 海外入養은 兒童의 入養 後의 適應이 容易하지 않을 뿐 아니라, 適應에 成功하지 못할 境遇, 그들 兒童이 決코 幸福할 수 없을 것이라는 社會事業的 理論을 土嚙로 한 것이 그 하나요, 또 하나는 우리 兒童의 養育을 外國에 맡기는 것은 國家的 또는 國民的 矜持를 害치는 일이라는 데 根據를 두고 있다. 筆者는 海外入養에 對한 反對論은 매우 妥當한 것이며, 이에 對하여 反論할 생각이 없다. 우리 나라 兒童이 西歐社會에 入養되어 가는 40余國 兒童 中 入養된 國家나 家庭에서 가장 잘 適應하여 知能이 뛰어나고 意志가 강한 兒童들이라는 높은 評價를 받고 있는 것은 事實이며,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나, 우리 兒童들이 成長해가면서 克服하는 데 끝까지 힘겨워하고 또 問題로 남는 것은 “Identity”에 關해서이다. 우리 兒童을 僑民家庭에 入養시키는 境遇 또는 國內入養된 事實을 안 兒童에게도 問題가 될 “Identity”의 問題이거늘, 하물며 白人系나 黑人系 家庭에 入養되었을 境遇, 게다가 文化圈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 兒童들이 이 問題로 苦悶하는 것은 極

히 自然스러운 일이며 우리로서 깊이 關心을 가져야 할 性質의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國民經濟가 刮目할 만큼 成長되어감에 따라 國民的 矜持 亦是 正比例하여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數의 우리 兒童들을 外國으로 入養보내는 일은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못된다.

이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나라 兒童이 外國家庭에 입양되고 있는 理由는 그것이 次善策이기는 하나, 그리고 國民的 矜持를 沮害하고, 또 入養되는 우리 兒童들에게 適應하지 못하여 苦痛을 겪게 할 危險負擔이 있음이 事實이나 우리 國民經濟의 現能力이나 社會福祉의 供給能力에 비추어 國內에서 無理하게 受容하는 것보다 이들 兒童 自身들을 위하여 海外에 좋은 家庭을 찾을 수만 있다면 入養보내는 길밖에 없다는 現實的인 視角에서이다.

한 外國의 社會福祉學者는 「海外入養은 自國內에서 可能한 모든 手段을 講究하고서도 안될 境遇에 取하여도 無妨한 最後的인 次善策이다」라는 意見을 提示하였다. 國家的으로 우리 既成人들이 兒童保護에 最善을 다하고 있는지에 關하여 우리는 反省할 餘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國內的인 次善策으로서 保護받아야 할 兒童들을 國內入養시키는 데 政府는 政府 나름대로, 民間入養機關은 그들 나름대로 誠意를 다하고 있으나 生父母를 떠난 兒童 全員을 受容하기에는 너무나 沮害要素가 많다.

國內入養으로 解決하지 못한 兒童의 國內的 保護方策으로서 收容施設保護, 家庭委託保護 등을 곧 생각할 수 있으나 後者는 우리 나라 財政 形편으로 1970年代初에 政府가 拋棄하고 말았기 때문에 國內的 次善策으로서 남는 것은 收容施設保護뿐이다.

現在 全國의 施設에 收容保護中인 兒童數는 約 23,000名 程度일 것이다. 이들을 先進國水準으로 保護하려면 施設을 크게 改善하여야 하고 給食, 教育, 保健 등 水準向上을 위하여 보다 많은 政府補助를 準備하여야 하나 政府로서는 改善을 위하여 크게 努力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어떤 限界에 이르고 있는 느낌이다. 萬一 政府가 어떠한 契機에 海外入養을 全面的으로 中斷한다고 할 때, 그 後 10年內에 收容施設에 保護되는 兒童의 數는 100,000名을 훨씬 넘을 것이다. 이는 現在의 收容力의 4배가 넘으며 政府補助 亦是 그만큼 늘어나야 하며 그 後에 있어서도 最少限 8年間은 더 施設收容 能力과 政府補助는 繼續 늘려가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努力에도 不拘하고 收容兒童들의 年齡이 18歲가 넘으면 據處할 宿所와 삶을 위한 職場을 政府나 施設責任者가 찾아주어야 한다. 天文學的 規模의 政府補助로써도 100,000名이 훨씬 넘어야 할 收容施設 規模를 準備한다 해도, 그 길이 결코 兒童들 뿐만 아니라 國家的으로 바람직한 結果를 가져오리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海外入養을 原則적으로 贊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國內의 여러 與件에 비추어 우리 나라로서는 海外入養이 不可避할 뿐이다. 그리고 政府는 1960年代부터 兒童은 비록 代理家庭일망정 家庭에서 養育되어야 한다는 政策에서 海外入養에 問題點이 많음에도 不拘하고 이를 收容施設 保護보다 優先에 두어 許容해왔다. 그러나 海外入養의 길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다. 共和黨 政府 때는 2次에 걸쳐 北歐에 對한 入養을 中斷했던 일이 있었는데 하던, 1981年(그 後 1985年으로 變更)에 海外入養을 終熄시킬 計劃으로 1975년부터 海外入養의 쿼타制를 마련, 每年 海外入養 兒童數를 줄여가는 反面, 義務적으로 民間機關의 國內入養數를 늘려가는 政策도 試圖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人間의 運命을 左右하는 入養은 그것이 國內入養이든 海外入養이든 間에 入養에 關聯되는 나라의 社會的, 經濟的 또는 文化나 法律的 事情과 깊이 關聯된 問題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政府의 政策만으로 左右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지난 10餘年 間의 갖가지 努力과 體驗을 通하여 우리는 體得하였다. 海外入養에 對한 贊反에 있어서 우리가 꼭 記憶하고 있어야 할 일 中의 하나는 入養되는 兒童들의 장래를 위하여 海外入養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既成人들의(國民的) 矜持를 위하여 反對할 것이냐를 늘 問題가 擡頭될 때마다 저을질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IV. 보다 바람직한 入養을 위하여

1. 入養은 次善策

兒童福祉에 있어서 入養이 最上의 方法이 아님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 나라가 地球村에 있어서 Intercountry Adoption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못된다. Adoptive Country인 美國에 있어서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中南美로부터의 兒童入養이 부쩍 늘고 있기는 하나, 아직 韓國으로부터 入養되는 兒童이 中南美 여러 나라로부터 入養되는 兒童보다 더 많다. 그 理由에 關한 好意的인 美國 社會事業家의 意見은 우리 韓國兒童이 頭腦나 性格이 뛰어나고 美國社會에 잘 適應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나라의 入養關係法이 잘 되어있고 關係 入養機關이 水準높은 Service를 하고 있으며 入養으로 생기는 問題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Placing Country의 入養機關의 責任者의 主張을 떠난다 하더라도 事實에 가까운 評價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海外에 그렇게 많은 兒童을 보내고 있는 일은 國內 어딘가에 問題가 있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入養은 次善策인 同時에 事後治療的인 福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는 次善策보다는 最上策을, 事後治療的 프로그램보다는 事前豫防的 프로그램을 애써 찾아야 한다고 確信한다. 筆者가 大韓社會福祉會의 事業을 入養 外에 家庭 福祉事業, 地域社會 福祉館 事業을 크게 展開했던 것은 이러한 入養에 關한 理解에서 豫防事業을 擴大하였던 것이다.

우리 政府가 福祉社會 실현을 行政指標로 하고, 第6次 經濟 5個年計劃에 있어서 低所得者의 福祉를 위하여 획기적인 事業을 反映하고자 하는 意志를 보이고 있는 것은 꼭 多幸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事業計劃에 貧困層의 子女扶養을 支援하는 特別한 配慮나, 未婚母와 그 子女를 위한 어떤 計劃 그리고 病弱해서 버려진 棄兒들에 對한 醫療施設 計劃을 反映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또 다른 5年間은 政府의 福祉事業으로 海外入養이 減少되는 일을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政府에 바라기는 入養에 關한 이러한 視角에서 民間社會事業機關이 이 問題 解決을 위하여 創意的인 事業을 가지고 能動的으로 參與하도록 政策的인 配慮를 하여 우리 나라 兒童들이 入養家庭이나 收容施設에서 保護를 받지 않고, 그들 父母들 家庭에서 사랑받고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國內入養은 最上의 次善策

父母의 품을 떠나 中間地帶에서¹¹⁾ 保護者를 찾고 있는 兒童들에게는 그들 自身の 父母를 찾아 돌려보내는 것이 大概의 경우 最善의 길이기 는 하나 父母의 家庭에 돌려보내지 못하는 때가 적지 않다. 父母의 虐待가 심하다든가, 絶對貧困으로 扶養能力이 없다가, 父母가 離婚하여 扶養責任을 모두 지려고 하지 않는다든가, 父母가 모두 家出하여 行方을 감추었기에 찾을 수가 없다가, 未婚母로서 兒童扶養을 忌避한다든가 等等 父母에게 돌려보낼 수 없는 狀況에 있는 兒童이 너무나 많다. 이 경우 그들 中間地帶의 여러 狀況에 비추어 國內入養이 最上의 次善策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 社會는 우리의 最善을 다해 國內入養의 伸張을 꾀하여야 하겠다.

國內入養의 伸張을 위해서 우리 社會가 힘써야 할 첫 課題는 入養에 對한 意識을 父母中心에서 兒童福祉 爲主로 바꾸어야 한다는 點이다. 요즘 MBC 等 大衆媒體는 迷兒찾기에 積極積인 協力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感謝히 생각하고 있으며, 이 Campaign을 主管하는 韓國어린이財團에 敬意를 표한다. 우리 政府가 勇斷만 내린다면 그리고 創意的인 方案을 指示하여 國內入養에 關한 大大的인 Campaign을 企劃한다면 大衆媒體가 기꺼이 協力할 것으로 생각한다.

國內入養이 中間地帶에 있는 아동들에게 最上의 次善策이 된다는 것은 앞서 생각 해본 여러 가지 事情을 綜合해보면 곧 首肯이 갈 것으로 안다. 그러나 國內入養이 보다 活潑하게 展開되기 爲해서는 몇 가지 政策的, 法律的 配慮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그 하나는 國內 入養機關의 法律上의 設置根據를 入養特例法에 明示하여야 할 것이며, 그 國內 入養機關은 入養이 高度의 專門性이 必要한 만큼 專門化되어야 하며, 國內入養을 專擔하도록 하되 政府의 積極的인 指導와 財政支援을 받아야 할 것이다. 英國의 例를 紹介하자면 國內入養을 위하여 Britain과 Wales에 41個 公認 民間入養機關이 있고, Scotland에 5個 公認 民間入養機關이 있으며 그 밖에 Britain 에는 129個 地方政府가 入養機關으로서의 機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上記 公認 民間機關들은 約 30個所에 支部를 갖고 있기도 한다. 特히나 國內入養의 專門化에 있어서 留意할 것은 訓練된 專門的 相談員의 確保와 秘密維持에 必要한 面接室의 準備와 記錄의 徹低한 秘密維持 裝置 等인 바, 國內 入養機關이 地方政府인 境遇, 이런 點을 疏忽히 하는 印象을 받았다. 한 市郡의 兒童相談員은 面接室이 없어 宿直室이나 茶房을 利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었는데 그런 狀況에서 어떻게 國內入養이 可能한지 모르겠다.

現行 入養特例法에 依하면 養父母는 반드시 入養申告를 하여야 할 法律上의 義務를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義務에 따라 入養申告를 한 例는 거의 없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養父母의 親生子로 就籍한다. 때문에 우리 나라 國內 入養家庭은 例外없이 違法行爲를 한다. 게다가 그 入養을 入養後 1年間은 保障해주지 않으며 그 後에 있어서도 法律적으로나 社會적으로 明文으로 保障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養子の 親父母와 法廷問題가 생기면 親生者로 入籍한 違法行爲 때문에 親父母 側에 依하여 養父母가 告發 當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우리 社會로서 眞正 國內入養이 切實하다면 國內 入養機關 法條項은 서둘러 改定하여야 할 것이다.

Europe의 한 나라는 國內 入養家庭에 入養에 必要한 費用을 政府가 補助한다. 그리고 Sweden은 養父母에게도 最長 9個月의 有給 出產休暇와 兒童養育費 補助가 있다. 中間地帶 兒童들을 國內入養으로 모두 受容하지 못할 境遇 施設收容 保護와 海外入養밖에는 旣 路가 없으며, 그 두 方法이 모두 우리 社會로서 願치 않는 것이라면 우리 政府는 此際에 革新的인 施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特히나 海外 入養 機關에 對하여 國內入養을 많이 하도록 하면서 國內入養에 所要되는 費用을 海外 養父母의 入養報償金에 依存토록 하고, 只今 하던 國內立養 助助金 支給을 中斷한 것은 合理的인 措置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3. 海外入養의 水準向上과 副次的 事業領域의 擴大

40個國에 達하는 Placing Countries 中 韓國은 入養特例法이 있고 海外入養에 關한 許諾 行政指針들이 있는 點으로 보나 訓練된 入養相談員이 民間入養機關에서 일하고 있다는 點에 비추어 入養 Service가 世界에서 가장 높은 水準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現場에 20余年間 몸담고 있었던 사람의 눈에는 많은 改善의 餘地가 보인다.

海外入養을 終熄시킬 目的으로 政府가 採擇한 入養의 쿼타制에는 매우 深刻한 問題가 많았기 때문에 그 制度를 政府가 廢止한 것은 極多幸스러운 일이었다. 그때 筆者는 政府가 그러한 쿼타制가 아닌 새로운 制度를 考慮할 것을 建議했으나 採擇되지 않았다. 建議內容은 各 入養機關別 海外入養 兒童數의 上限線과 國內入養 兒童數의 下限線을 每年 中間地帶의 兒童數, 入養機關別 人力의 規模나 前年度 入養 實績에 비추어 定해줄 것을 建議했었다. 그 理由는 國內入養의 申告를 戒하고 海外入養 規模를 適切한 線에서 抑制하여 그 Service의 水準을 높임으로써 國民的 矜持가 沮害되는 것을 極小化하고 入養되는 兒童들의 福祉를 보다 높이자는 目的을 두었었다. 入養이 高度의 專門的 技術과 社會事業의 本質에 徹低해야 할 프로그램인 만큼, 政府가 無理하게 많은 兒童을 國內入養하도록 要求한다거나 民間機關이 海外入養에 있어서 이를 物量化하는 것을 政府가 放任한다면 兒童의 福祉를 저버리거나 國民的 矜持를 沮害할 憂慮가 있다고 본다. 이같은 視角에서 筆者는 現在도 우리 政府가 數年前에 建議했던 提案을 檢討하여 우리 나라 入養事業의 水準向上을 위하여 힘써주었으면 하는 所望이다.

海外家庭에 入養된 兒童에 依하여 事後指導를 徹底히 하도록 하는 行政指針을 두고 政府가 그 實行을 指導하고 있는 것은 國際적으로 매우 높이 評價받는 內容 中の 하나이다. 그러나 入養된 兒童이 國籍을 取得할 때 相對國의 入養機關이 事後指導 報告를 하도록 한 行政指針은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法律上 履行할 수 없는 要求이기 때문에 入養相對國의 入養機關이 그 나라 法으로 가능한 範圍內的 Service만을 要求하는 것으로 若干 修正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入養되는 兒童의 後見權의 時間的 境界點을 入養特例法에 明示하는 것은 入養當事國(Adoptive Country와 Placing Country)의 두 機關 間의 後見權에 關한 法律的인 問題가 생겼을 때 그 問題를 圓滿하게 解決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現行 入養特例法은 入養對象 兒童의 資格에 關하여 解釋上 많은 混線을 가져온다. 現行法으로는 未婚母가 扶養을 拋棄한 兒童은 施設保護를 받는 兒童이 아니기 때문에 嚴格히 말해서 入養될

수 없다. 따라서 入養시키기 위해서는 一定 施設로 옮겨 保護해야만 한다는 解釋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兒童의 環境을 자주 옮기고 돌보는 사람이 바뀌는 것은 兒童의 正常的 心理發達에 害가 될뿐 아니라 옮겨다니는 동안 身體的인 健康이 나빠지기 마련이고 不必要한 行政力과 費用을 浪費하게 된다.

“Special needs children”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으나, 地球村에서는 心身의 疾病이나 障礙있는 兒童에 對한 關心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여러 實情을 감안해 볼 때, 海外 入養機關이 率先해서 “Special needs children”에 對하여 入養 外의 副次的 事業으로 關心을 갖지 않는다면, 現在로서는 國內의 어느 民間社會事業 機關도 이를 들볼 수가 없다. “Special needs children”에 對한 서비스는 入養과 關係없는 프로그램이라고 入養機關이 外面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外面해 버리는 것이 不必要한 支出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pecial needs children”이 가장 많은 곳은 바로 入養機關이 入養對象 兒童을 찾는 中間地帶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兒童은 中間地帶에 있는 兒童들의 30%~40%에 達한다. 海外 入養이 그들을 全적으로 外面한다고 假定할 때 그들 中 死亡하는 數는 年間 2,000 名으로부터 3,000 名에 達할 것이다. 이들 “Special needs children”에 對하여 海外 入養機關이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道義的인 責任에서이지 法律的인 責任이 있어서가 아니다. 入養機關의 根源的 目的이 不遇한 兒童의 福祉向上에 있는 것이며, 現時點에서 海外 入養機關만이 그들에 對한 施惠를 副次的 事業領域으로 擴大할 수 있는 것이라고 判斷하기 때문에 海外 入養機關이 그들을 外面하지 말고 聖經에 있는 바 「착한 사마리아人」이 되자는 것이다. 이는 海外 入養機關의 道義的 責任인 同時에 海外 入養機關만이 누릴 수 있는 特權이다. 海外 入養機關이 率先하여 “Special needs children”에 對한 서비스를 할 때 우리는 우리 政府의 補助도, 우리 나라 經濟界의 呼應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맺는 말

論文을 써본 經驗이 많지 않아 이 글을 쓰는 데 꽤나 많은 時間과 적지 않은 苦生을 하였으며 거의 完成했던 原稿가 마음에 들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했다.

入養은 그것이 國內入養이든 海外入養이든 間에 그 나라 法律이나 社會的 規範에 따라야 하는 面이 많기 때문에 이 글을 쓰기 始作할 때에는 入養에 關係되는 法律에 重點을 두고 쓸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專門分野가 아닌 點을 다루다가 웃음거리

가 될까 두려워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問題가 되는 點들을 散發적으로 이곳 저곳에 摘示하여 讀者들이 關心을 갖고 研究하기를 바랐다.

이 글에 引用된 外國의 資料는 今年 東京에서 開催된 ICSW 世界大會를 위하여 ICSW가 世界 14個國의 學者 또는 社會事業의 現場人들에게 原稿를 付託하여 出版한 “Adoption in Worldwide Perspective—A Review of Programs, Policies and Legislation in 14 Countries”에 실린 論文들 中에서 引用한 것이며, 筆者는 이 冊字에 “Inter-country Adoption Program in Korea; Policy, Law and Services”라는 題目으로 寄稿하였다. 이번 學會誌에 실릴 原稿 마감일이 10月末이라 해서 이 冊字에 실린 內容을 많이 紹介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寄稿할 또다른 機會가 있으면 入養에 關하여 다른 視角에서 여러 나라의 資料를 紹介해 볼까 한다. 入養은 여러 가지 學問的 分野에서 研究해볼 수 있는 社會事業 領域이기도 하다. 이 資料가 우리 나라 社會事業 發展에 多少나마 寄與하기를 거듭 바라마지 않는다.

— 註 —

- ① 國際入養에 있어서 西歐社會의 社會事業家들은 外國의 兒童을 入養하는 나라를 흔히 “Receiving Country”라 부르고, 入養을 外國에 보내는 兒童의 나라를 “Sending Country”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적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兒童을 外國에 入養보내는 우리 나라의 立場에서 볼 때 이 用語가 兒童을 物件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印象을 받아 왔기 때문에, 1982年 西獨政府 主催의 入養關係 國際會議, Bombay의 ICSW 地域會議, 1984年 Montréal에서 開催된 ICSW 世界會議에 參席하였을 때 筆者가 그 用語의 是正을 要求하였던 바, 그 後부터 美國 및 Canada에서는 筆者가 提案한 “Adoptive Country”와 “Placing Country”를 慣用하게 되었다.
- ② Gunilla Andersson: “The Adopting and Adopted Swedes and Their Contemporary Society”, *Adoption in Worldwide Perspective*, page 23. Sweden은 約 40個國으로부터 外國兒童 25,000名을 入養한 나라이며, 人口에 比하여 가장 높은 比率의 兒童을 入養한 나라로 自評하고 있다.
- ③ 上記論文 page 24.
- ④ New York에 있어서 白人兒童을 入養하려면 公認機關을 通하더라도 6,000弗乃至 7,000弗을 支出하여야 하고, 辯護士를 通할 境遇는 約 15,000弗을 補償하여야

하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 ⑤ 이 數字에는 義父母에게 入養되는 兒童과 같은 門中에서 入養되는 兒童數가 包
 含되어 있지 않다.
- ⑥ 이 表의 兒童數는 正確한 數를 알 수 없다. Mrs. Gunilla Andersson에 依하여
 計算된 것은 第 2次 世界大戰中 Sweden으로 避難시켰던 兒童들이 戰禍로 父母
 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Sweden 家庭에 入養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Sweden
 政府는 1965年末 大韓社會福祉會와 入養約定을 締結하여 1966년부터 韓國兒童을
 入養하기 始作했다.
- ⑦ Netherlands 內의 兒童의 大部分은 義父母에 依한 入養이 大部分이고, 같은 民
 族內의 入養의 數는 매우 적다.
- ⑧ 同 資料는 1971년부터 1984년까지에 걸친 平均値이다. 治療費 負擔實額은 自
 體病院을 利用하는 兒童이 많기 때문에 1980年 7月 以後부터는 다른 病院을 利
 用하였을 境遇에는 治療費 負擔額이 約 2.5倍 程度 더 支出되었을 것이다. 한
 편 1984年의 治療費 負擔額은 163, 275, 568원으로서 實로 엄청난 金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積極的 醫療活動을 通하여 保護兒童의 年 平均 死亡率을 3.63
 %로 減少시킨 놀라운 寄蹟을 올렸다.
- ⑨ 우리政府는 北歐에 駐在하는 北傀代表들이 우리 나라 海外入養을 신랄하게 惡宣
 傳하기 때문에 1970年末과 1974年末에 北歐에의 入養을 급작스럽게 4개월간 또
 는 10개월간 中斷한 적이 있었다. 이때 養父母를 못 찾은 아기들이 많아져 大韓
 社會福祉會는 한 委託家庭에 4~5名 以上을 맡긴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保護
 兒童들의 死亡率은 아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例年の 2倍 乃至 3倍로 높아졌
 다.

保護兒童死亡率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平均
7.1%	4.6%	3.7%	4.1%	8.3%	2.7%	2.4%	3.7%	3.3%	3.9%	3.6%	2.9%	1.4%	3.3%	3.63%

- ⑩ 그러나 印度는 Guardians and Wards Act(1890年)에 依하면 Sweden, France,
 Netherlands, Belgium, 西獨 및 美國 等, 19個 基督教 國家에 入養을 시키고 있
 다. 이 法에 依하여 印度兒童은 外國에 入養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 國家의 家
 庭에 兒童養育을 18歲까지 委託하는 形式을 取하는 것이며, 그 後에는 養父
 母 國家의 法律에 依하여 入養하게 된다. 參考로 印度의 入養에 관한 法律의
 重要骨子を 摘記하면 아래와 같다.

a. 養父母와 養子는 모두 Hindus이어야 한다.

b. 養親은 그, 또는 그녀에게 아들, 孫子, 또는 曾孫子가 없을 경우(親生子이든 入養子이든 間에)에 限하여 한 아들만을 入養할 수 있다. 한편 養親이 이미 딸, 孫女 또는 曾孫女가 있을 경우에는 딸을 入養할 수 없다.

c. 入養될 兒童의 年齡制限은 15歲 以下이다.

(이 資料는 印度社會福祉協議會의 事務總長 Ms. Avi J. Jungalwalla의 "Adoption Policies and Experiencies in India"에 依한 것이다.

⑪ 中間地帶의 兒童이란 用語는 筆者가 몇 해 前 大韓社會福祉會 職員들의 現任 訓練用 教材에 처음 使用해본 것이다. 父母를 떠난 後 入養되거나 長期 收容保護 되기 前까지의 棄兒, 親權 포기된 兒童, 一時的인 施設 또는 委託家庭에서 保護中인 兒童들은 包括하는 것이다.